

장:(2000)사회개발비 관:(2300)사회보장비 항:(2310)생활복지 세항:(2311)복지정책관리 세세항:(120)경상적경비 [본청][단위:천원]

과	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			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국	도	지	기	초
2000					[국 270,505,231	도 95,347,922	지 3,277,500	균 0]	
사회개발비		395,595,802	293,743,906	101,851,896	[기 9,100,625	분 17,364,524	교 0]	
2300					[국 270,505,231	도 95,347,922	지 3,277,500	균 0]	
사회보장비		395,595,802	293,743,906	101,851,896	[기 9,100,625	분 17,364,524	교 0]	
2310					[국 270,505,231	도 95,347,922	지 3,277,500	균 0]	
생활복지		395,595,802	293,743,906	101,851,896	[기 9,100,625	분 17,364,524	교 0]	
2311					[국 270,505,231	도 95,347,922	지 3,277,500	균 0]	
복지정책관리		395,595,802	293,743,906	101,851,896	[기 9,100,625	분 17,364,524	교 0]	
100									
경상예산		192,800	163,850	28,950					
120									
경상적경비		192,800	163,850	28,950					
	201								
	일반운영비	59,200	38,910	20,290					
		59,200	38,910	20,290	01 일반운영비				
					○ 일반수용비		=	20,000	
					○ 운영수당		=	21,000	
					○ 급량비		=	18,200	
	202								
	여비	58,800	48,600	10,200					
		58,800	48,600	10,200	01 국내여비				

장:(2000)사회개발비 관:(2300)사회보장비 항:(2310)생활복지 세항:(2311)복지정책관리 세세항:(120)경상적경비 [본청][단위:천원]

과	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복지정책업무추진 = 58,800
	203 업무추진비	72,800	72,740	60	
		4,200	4,200	0	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○국장 = 4,200
		50,600	50,600	0	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○보건, 위생, 복지, 환경정책추진 = 35,000 ○복지환경시책추진 = 12,000 ○복지정책업무추진 = 3,600
		18,000	17,940	60	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○복지정책과 = 4,200 ○보건위생과 = 5,400 ○환경관리과 = 4,200 ○수질관리과 = 4,200
	301 일반보상금	2,000	3,600	△1,600	
		2,000	1,100	900	10 행사실비보상금 ○시설아동부모교육참가 및 모범어린이 실비보상(중앙) = 2,000

장:(2000)사회개발비 관:(2300)사회보장비 항:(2310)생활복지 세항:(2311)복지정책관리 세세항:(210)보조사업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200	사업예산	395,403,002	293,580,056	101,822,946	[국 270,505,231 도 95,155,122 지 3,277,500 균 0] [기 9,100,625 분 17,364,524 교 0]
210	보조사업	327,231,389	253,904,553	73,326,836	[국 270,505,231 도 47,625,533 지 0 균 0] [기 9,100,625 분 0 교 0]
	201 일반운영비	88,700	0	88,700	
		88,700	0	88,700	01 일반운영비 ○가정위탁 상해보험료 지원 = 88,700 (국) 62,090 (도) 26,610
	307 민간이전	546,723	949,326	△402,603	
		423,185	830,116	△406,931	02 민간경상보조 ○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= 91,935 (국) 36,774 (도) 55,161 ○노인일자리 전담요원 1,500,000원 x 12개월 = 18,000 (국) 9,000 (도) 9,000 ○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 = 283,250 (국) 83,250

장:(2000)사회개발비 관:(2300)사회보장비 항:(2310)생활복지 세항:(2311)복지정책관리 세세항:(210)보조사업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도) 200,000 = 30,000 (국) 15,000 (도) 15,000
		123,538	119,210	4,328	04 민간행사보조 ○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= 123,538 (국) 61,769 (도) 61,769
	308 자치단체등 이전	300,256,387	220,836,145	79,420,242	
		300,256,387	220,836,145	79,420,242	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○장애수당 25,684,696 (국) 17,979,287 (도) 7,705,409 · 중증장애수당(12,000명) = 21,649,456 (국) 15,154,619 (도) 6,494,837 · 경증장애수당(11,209명) = 4,035,240 (국) 2,824,668 (도) 1,210,572 ○장애인의료비 = 815,000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국) 652,000
					(도) 163,000
					○장애아동부양수당 2,109,385
					(국) 1,476,569
					(도) 632,816
					· 중증장애인가동부양수당(448명) = 1,637,785
					(국) 1,146,449
					(도) 491,336
					· 경증장애인가동부양수당(393명) = 471,600
					(국) 330,120
					(도) 141,480
					○장애인자녀교육비(127명) = 102,316
					(국) 81,853
					(도) 20,463
					○장애인 재활보조기구(760명) = 85,300
					(국) 68,240
					(도) 17,060
					○장애인등록진단비 12,620,000원 x 50% = 6,310
					(국) 6,310
					○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 = 96,000
					(국) 60,000
					(도) 36,000
					○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= 4,928,623
					(국) 3,449,628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도) 1,478,995
					○장애인 일자리사업 869,318
					(국) 579,545
					(도) 289,773
					·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= 202,620
					(국) 135,080
					(도) 67,540
					·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= 666,698
					(국) 444,465
					(도) 222,233
					○기초생활보장급여(93,000명)
					200,562,500,000원 x 90% = 180,506,250
					(국) 160,450,000
					(도) 20,056,250
					○긴급복지지원비(5,000명)
					4,208,645,000원 x 90% = 3,787,781
					(국) 3,366,917
					(도) 420,864
					○자활근로사업(2,515명) 18,969,900,000원 x 90% = 17,072,910
					(국) 15,175,920
					(도) 1,896,990
					○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
					221,280,000원 x 90% = 199,152
					(국) 177,024

장:(2000)사회개발비 관:(2300)사회보장비

항:(2310)생활복지

세항:(2311)복지정책관리

세세항:(210)보조사업

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도) 22,128
					○ 자활후견기관 운영 2,602,000,000원 x 85% = 2,211,700
					(국) 1,821,400
					(도) 390,300
					○ 자활소득공제사업(3,100명) 4,094,904,000원 x 90% = 3,685,414
					(국) 3,275,924
					(도) 409,490
					○ 부랑인복지시설 운영 = 567,270
					(국) 397,089
					(도) 170,181
					○ 가사간병도우미사업(591명) = 5,551,625
					(기) 5,551,625
					○ 경로연금(56,000명) = 21,221,821
					(국) 21,221,821
					○ 어르신 일자리지원사업 = 7,800,000
					(국) 6,000,000
					(도) 1,800,000
					○ 독거노인도우미 파견 8,125,000,000원 x 90% = 7,312,500
					(국) 6,500,000
					(도) 812,500
					○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60,000,000원 x 50% = 30,000
					(국) 30,000
					○ 노인돌보미 지원 3,297,158,000원 x 85% = 2,802,585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국) 2,308,011
					(도) 494,574
					○노인생활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1,455,000,000원 x 85% = 1,236,750
					(국) 1,018,500
					(도) 218,250
					○노인교통수당 150,000원 x 280,000명 x 15% = 6,300,000
					(도) 2,751,000
					(기) 3,549,000
					○그룹홈형태 아동보호 38,176,000원 x 7개소 x 60% = 160,340
					(국) 106,893
					(도) 53,447
					○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9,132,000원 x 7명 x 85% = 54,336
					(국) 44,747
					(도) 9,589
					○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= 132,600
					(국) 109,200
					(도) 23,400
					○입양장려금 지원 = 13,600
					(국) 11,200
					(도) 2,400
					○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	
					30,000원 x 1,168명 x 6개월 x 85%	= 178,704
					(국)	147,168
					(도)	31,536
					○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1,787,856,000원 x 90%	= 1,609,071
					(국)	1,430,284
					(도)	178,787
					○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사업	
					124,000,000원 x 75%	= 93,000
					(국)	62,000
					(도)	31,000
					○지역아동센터(공부방)운영	
					24,000,000원 x 81개소 x 75%	= 1,458,000
					(국)	972,000
					(도)	486,000
					○아동복지교사 지원	
					1,000,000원 x 122명 x 9개월 x 85%	= 933,300
					(국)	768,600
					(도)	164,700
					○저소득층학생 수능공부방 지원	
					12,000,000원 x 15개소 x 75%	= 135,000
					(국)	90,000
					(도)	45,000
					○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	= 104,184
					(국)	104,184

과 목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= 162,500 (국) 162,500 ○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 초기투자비 = 65,000 (국) 50,000 (도) 15,000 ○아이돌보미사업지원 = 174,046 (국) 143,332 (도) 30,714
	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	26,339,579	32,019,082	△5,679,503	
		26,339,579	32,019,082	△5,679,503	01 자치단체자본보조 ○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= 3,328,800 (국) 1,664,400 (도) 1,664,400 ○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= 809,396 (국) 404,698 (도) 404,698 ○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380,000,000원 x 75% = 285,000 (국) 190,000 (도) 95,000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부랑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220,000,000원 x 75%
					= 165,000
					(국) 110,000
					(도) 55,000
					○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
					= 8,219,338
					(국) 5,479,559
					(도) 2,739,779
					○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
					= 1,899,983
					(국) 1,266,655
					(도) 633,328
					○장묘행정개선사업
					10,881,037
					(국) 10,367,500
					(도) 513,537
					· 천안추모공원조성사업
					= 4,863,537
					(국) 4,500,000
					(도) 363,537
					· 공주추모공원조성사업
					= 2,100,000
					(국) 2,100,000
					· 아산남골당 신축
					= 2,600,000
					(국) 2,450,000
					(도) 150,000
					· 청양공설남골당신축
					= 346,500
					(국) 346,500
					· 홍성화장장현대화사업(국비 부족분)
					= 971,000

장:(2000)사회개발비 관:(2300)사회보장비 항:(2310)생활복지 세항:(2311)복지정책관리 세세항:(210)보조사업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산	출기초
					(국)	971,000
					○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800,000,000원 x 75%	= 600,000
					(국)	400,000
					(도)	200,000
					○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40,300,000원 x 75%	= 30,225
					(국)	20,150
					(도)	10,075
					○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	= 120,800
					(국)	36,240
					(도)	84,560
220					[국 0 도 47,529,589 지 3,277,500 균 0]	
자체사업		68,171,613	39,675,503	28,496,110	[기 0 분 17,364,524 교 0]	
	201 일반운영비	40,000	0	40,000		
		30,000	0	30,000	01 일반운영비 ○독립유공자 사료집 발간	= 30,000
		10,000	0	10,000	02 행사운영비 ○저출산고령화사회극복 혁신토론회	= 10,000
	207 연구개발비	80,000	0	80,000		

장:(2000)사회개발비 관:(2300)사회보장비 항:(2310)생활복지 세항:(2311)복지정책관리 세세항:(220)자체사업 [본청][단위:천원]

과	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80,000	0	80,000	01 용역비 ○대단위 실버복합단지조성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= 30,000 ○장애인복지발전 기본계획 수립 = 50,000
	301 일반보상금	78,000	60,000	18,000	
		78,000	60,000	18,000	01 사회보장적수혜금 ○국가유공자 및 유족위문 = 44,000 ○사회복지시설생활자 위문 = 34,000
	307 민간이전	5,052,728	3,470,349	1,582,379	
		1,315,334	1,145,572	169,762	02 민간경상보조 ○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= 47,250 (도) = 33,075 (분) = 14,175 ○사회복지협의회 운영 = 104,000 ○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보수교육 = 25,000 (도) = 15,000 (분) = 10,000 ○장애인체육관 운영 = 67,752 (도) = 43,845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분) 23,907
					○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= 207,900
					(도) 136,238
					(분) 71,662
					○ 수화통역센터 운영 = 85,600
					(도) 62,920
					(분) 22,680
					○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= 135,548
					(도) 99,084
					(분) 36,464
					○ 편의시설설치 시민축진단 운영 = 52,892
					(도) 27,446
					(분) 25,446
					○ 지체장애이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= 87,750
					(도) 64,125
					(분) 23,625
					○ 장애인 재활시설 근무자 처우개선
					· 3년미만 90,000원 x 13명 x 12월 = 14,040
					· 3~5년 120,000원 x 8명 x 12월 = 11,520
					· 5년이상 150,000원 x 11명 x 12월 = 19,800
					○ 사랑의 인술사업 = 80,000
					○ 장애인 브라스밴드단 운영 = 64,000
					○ 장애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= 20,000
					○ 장애인단체 재활사업(4개단체) = 50,000

장:(2000)사회개발비 관:(2300)사회보장비

항:(2310)생활복지

세항:(2311)복지정책관리

세세항:(220)자체사업

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심부름센터 1577상담전화 = 5,000 ○ 여성장애인 복지증진 패션쇼 = 20,000 ○ 충남수화교육장 운영 = 50,000 ○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 = 71,020 ○ 시각장애인 캠프 = 5,000 ○ 편의시설 실무자 양성교육 = 10,000 ○ 사회복지자원육성 및 전문성 강화 = 39,000 ○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사무실 임차 = 11,000 ○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도자 = 21,262 ○ 시각장애인 브라스밴드단 운영 = 10,000
		570,000	231,600	338,400	04 민간행사보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일보훈대상 개최지원 = 3,000 ○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(7개 단체) = 21,000 ○ 국가유공자를 위한 음악회 개최 = 100,000 ○ 사회복지의 날 행사 = 20,000 ○ 장애인의 날 행사 = 20,000 ○ 농아인의 날 행사 = 10,000 ○ 흰지팡이의 날 행사 = 12,000 ○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 = 20,000 ○ 전국시각장애인 장기대회 = 5,000 ○ 시각장애인 경로위안잔치 = 7,000 ○ 충남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= 10,000 ○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석 = 5,000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수화경연대회 = 5,000 ○시설장애인 및 종사자 체육대회 = 10,000 ○충남장애인 생활체육 탁구대회 = 5,000 ○장애인 합동결혼식 = 30,000 ○장애인채용박람회 개최 = 10,000 ○전국장애인 종합예술제 = 2,000 ○노인지도자 연수교육 = 13,000 ○노인솜씨자랑 및 시조경창대회 = 3,000 ○노인건강대축제 = 99,000 ○노인생활시설 어르신 및 종사자 한마당대회 = 20,000 ○후원자 아동만남행사 = 5,000 ○어려운아동 수련교실 운영 = 40,000 ○전국아동복지시설 축구대회 참가 = 10,000 ○어린이 주간행사 개최 = 45,000 ○노인자원봉사박람회 전국대회 참가 = 10,000 ○국제결혼가정 한마당 축제 = 30,000
		3,167,394	2,093,177	1,074,217	05 민간위탁금 ○장애인복지관 운영 = 1,622,522 (도) 1,133,860 (분) 488,662 ○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 = 122,609 (도) 82,365 (분) 40,244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(2개소) = 123,780
					(도) 83,868
					(분) 39,912
					○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(2개소) = 172,672
					(도) 65,802
					(분) 106,870
					○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(2개소) = 62,744
					(도) 40,046
					(분) 22,698
					○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(2개소) = 73,500
					(도) 44,100
					(분) 29,400
					○장애인특별운송사업(2개소) = 68,120
					(도) 37,060
					(분) 31,060
					○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근무자 처우개선 122,400
					· 3년미만 90,000원 x 17명 x 12월 = 18,360
					· 3~5년 120,000원 x 16명 x 12월 = 23,040
					· 5년이상 150,000원 x 45명 x 12월 = 81,000
					○장애인복지관 물리치료사 지원(2개소) = 42,696
					○장애인상담전화 운영 = 21,481
					○결연기관 운영 = 191,682
					(도) 95,841
					(분) 95,841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(2개소) = 375,924 (도) 187,962 (분) 187,962 ○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= 130,544 (도) 65,272 (분) 65,272 ○아동이용시설 처우개선비 = 36,720 (도) 22,032 (분) 14,688
	308 자치단체등 이전	34,716,610	15,051,386	19,665,224	
		34,716,610	15,051,386	19,665,224	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○이용시설 근무자 처우개선 187,992 · 3년미만 90,000원 x 365명 x 12월 x 20% = 78,840 · 3~5년 120,000원 x 129명 x 12월 x 20% = 37,152 · 5년이상 150,000원 x 200명 x 12월 x 20% = 72,000 ○장애인생활시설 운영(18개소) 15,086,250,000원 x 80% = 12,069,000 (도) 2,146,028 (분) 9,922,972 ○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(9개소, 지방이양) 854,000,000원 x 15% = 128,100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치료비 지원 10,000,000원 x 10명 x 70% = 70,000
					○장애수당 추가 12,000원 x 12,000명 x 12월 x 30% = 518,400
					○부부장애수당 35,000원 x 2,800가구 x 12월 x 30% = 352,800
					○중증장애인 보호자수당 40,000원 x 390명 x 12월 x 30% = 56,160
					○장애인신문 구독지원 3,000원 x 5,500세대 x 12월 x 30% = 59,400
					○장애인가사도우미 활동지원(150명) 800,000,000원 x 30% = 240,000
					○장애인월동비 지원 1,512,000,000원 x 30% = 453,600
					○시군수화통역센터 운영 70,000,000원 x 13개소 x 30% = 273,000
					○시군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71,000,000원 x 13개소 x 30% = 276,900
					○시군장애인 재활사업비 30,000,000원 x 16시군 x 30% = 144,000
					○장애인직업재활시설근무자 처우개선비 16,956
					· 3~5년 120,000원 x 3명 x 12월 x 30% = 1,296
					· 5년이상 150,000원 x 29명 x 12월 x 30% = 15,660
					○지역봉사사업(지방이양) 16,560,000원 x 10% = 1,656
					○노숙자쉼터 운영(지방이양) = 15,951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 시설근무자처우개선비(장애650, 아동·모자211, 노인550, 부랑인21)
					551,856
					· 3년미만 100,000원 x 212명 x 12월 x 20% = 50,880
					· 3~5년 150,000원 x 362명 x 12월 x 20% = 130,320
					· 5년이상 180,000원 x 858명 x 12월 x 20% = 370,656
					○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
					10,035,000,000원 x 80% = 8,028,000
					(도) 1,937,016
					(분) 6,090,984
					○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(지방이양)
					3,086,580,000원 x 30% = 925,974
					○ 경로당운영비 지원(지방이양)
					1,220,000원 x 5,200개소 x 25% = 1,586,000
					○ 무료경로식당 운영(지방이양)
					3,000원 x 2,040명 x 300일 x 25% = 459,000
					○ 노인건강진단(지방이양) 33,622,000원 x 15% = 5,044
					○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(지방이양)
					3,000원 x 1,752명 x 250일 x 25% = 328,500
					○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(지방이양)
					300,000,000원 x 10개소 x 20% = 600,000
					○ 경로당활성화사업(지방이양)
					20,000,000원 x 16개소 x 25% = 80,000
					○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도자
					1,771,800원 x 12월 x 16개소 x 50% = 170,093

장:(2000)사회개발비 관:(2300)사회보장비

항:(2310)생활복지

세항:(2311)복지정책관리

세세항:(220)자체사업

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아동복지시설 운영(지방이양) 5,174,014,000원 x 15% = 776,103
					○소년소녀가정지원(지방이양) 84,000,000원 x 10% = 8,400
					○가정위탁양육비 지원(지방이양) 672,000,000원 x 10% = 67,200
					○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(지방이양) 70,000,000원 x 25% = 17,500
					○아동급식비 지원(지방이양) 6,171,000,000원 x 25% = 1,542,750
					○모자복지시설 운영(지방이양) 424,843,000원 x 15% = 63,727
					○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(지방이양) 34,000,000원 x 25% = 8,500
					○양육모 그룹홈 운영(지방이양) 80,000,000원 x 25% = 20,000
					○학기중 토·일·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 = 3,277,500 (지) 3,277,500
					○제85회 어린이날 행사 = 30,000
					○어려운아동 추가지원 923,320,000원 x 30% = 276,996
					○퇴소아동 자립비 추가지원 2,000,000원 x 70명 x 30% = 42,000
					○저소득 모부자가정 추가지원 903,318,000원 x 30% = 270,996

장:(2000)사회개발비 관:(2300)사회보장비

항:(2310)생활복지

세항:(2311)복지정책관리

세세항:(220)자체사업

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모자가구주 기술교육 273,600,000원 x 30% = 82,080 ○모자보호시설 자녀 보조학습비 지원 25,920,000원 x 30% = 7,776 ○시설아동 사회적응훈련 지원 153,333,000원 x 30% = 46,000 ○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666,000,000원 x 30% = 199,800 ○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35,000원 x 1,800가구 x 12개월 x 30% = 226,800 ○독거노인 안전지킴이사업 600,000,000원 x 20% = 120,000 ○입양기관운영(지방이양) = 12,500 ○아동시설 오페수 및 전기안전점검 관리 = 21,600
	401 시설비및부 대비	1,600,000	0	1,600,000	
		1,600,000	0	1,600,000	01 시설비 ○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 = 1,600,000
	402 민간자본이 전	949,668	1,029,668	△80,000	
		949,668	1,029,668	△80,000	01 민간자본보조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보훈단체사무실 기능보강(5개소) = 15,000 ○광복단결사대 기념탐견립 = 350,000 ○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(지방이양) = 384,668 ○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(지방이양) = 50,000 ○장애인특별운송사업 차량구입비 지원 = 50,000 ○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임차료 = 100,000
	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	2,414,107	1,464,100	950,007	
		2,414,107	1,464,100	950,007	01 자치단체자본보조 ○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(지방이양) 724,304,000원 x 35% = 253,507 ○소규모장애인 작업장 설치 60,000,000원 x 2개소 x 30% = 36,000 ○장애인생활시설 환경조성 4,000,000원 x 18시설 x 30% = 21,600 ○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(지방이양) 20,000,000원 x 25% = 5,000 ○천안 장애인 실내체육관 기능보강 168,000,000원 x 50% = 84,000 ○천안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시범사업 40,000,000원 x 50% = 20,000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천안 추모공원 조성 시범사업 1,930,000,000원 x 50% = 965,000 ○아산 시각장애인회 장비보강 40,000,000원 x 50% = 20,000 ○아산 장애인부모회 기능보강 60,000,000원 x 50% = 30,000 ○예산 장애인 장비보강 120,000,000원 x 50% = 60,000 ○장애인복지관 증축 200,000,000원 x 50% = 100,000 ○아우내독립만세운동 순국자 추모각 건립 = 200,000 ○아우내독립만세운동기념공원 건립 = 300,000 ○태안시각장애인협회 기능보강 = 15,000 ○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= 40,000 ○복지시설 기능보강 = 243,000 ○시설퇴소 예정자 자립프로그램 시범운영 42,000,000원 x 50% = 21,000
	405 자산취득비	500	0	500	
		500	0	500	01 자산및물품취득비 ○행정사무장비 = 500
	701 기타회계전 출금	23,240,000	18,100,000	5,140,000	○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32,400,000,000원 x 10% = 23,240,000

